

의안번호	제 104 호
의결 연월일	2014. 12. . (제 336 회)

**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 
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자	임병운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4년 12월 1일

**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 
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(임병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발 의 자 : 임병운, 박봉순, 박한범  
박종규, 장선배, 최병윤  
이종욱

### 1. 개정이유

가. 현행 조례 상,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, 이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임.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 장애인, 노인 등의 경제활동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

나. 법령 개정 및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장애 명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용어로 수정(안 제6조)

- 정신지체장애인 →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아인, 정신장애인

나. 설치허가 취소자의 해지일 이후 설치 신청 금지조항 삭제(안 제7조)

다. 사용료 부과·징수기준과 방법에 대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」에 따르도록 수정(안 제8조)

라.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의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수정(안 별지 제1호서식)

**3. 개정 조례안 : 붙임**

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-34호

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”로, “설치에 관한”을 “설치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례가”를 “조례에서”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1월전”을 “1개월 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, “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”을 “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, 정신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1월전” 을 “1개월 전” 으로 하며,  
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조 중 “해당 기관의 「공유재산관리규정」에 의한다” 를  
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「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  
례」에 따른다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란 중 ‘주민  
등록번호’ 를 ‘생년월일’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<u>설치에 관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2-----            --- <u>설치에 필요한</u>-----            -----.</p>
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「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과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>② 공공시설내의 매점(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)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가</u> 정하는 바에 <u>의한다</u>.</p>	<p>제2조(적용의 범위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<u>조례에서</u> -----            -- <u>따른다</u>.</p>

<p>제3조(사전공고) 도지사,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(이하 “설치자”라 한다)은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<u>1월전에</u> 이를 공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사전공고) ----- ----- ----- ----- <u>1개월 전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(생략) 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<u>따라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</u>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(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의 직계 존·비속에 한한다)에게 그 운영권 탁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, 자폐성 장애인, 정신장애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계약해지) ① <u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</u>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체결 자에 대해 <u>최소한 1월전에</u>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7조(계약해지) ① 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1개월 전</u>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

<p>제8조(사용료 등)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·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「<u>공유재산 관리규정</u>」에 의한다.</p>	<p>제8조(사용료 등) ----- ----- ----- ---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</u>」 과 「<u>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</u>」 에 따른다.</p>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1호서식]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15 853 798 969"> <tr> <td>신청자</td> <td>주소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인적사항</td> <td>성명</td> <td></td> <td><u>주민등록번호</u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신청자	주소				인적사항	성명		<u>주민등록번호</u>		<p>[별지 제1호서식]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25 853 1407 969"> <tr> <td>신청자</td> <td>주소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>인적사항</td> <td>성명</td> <td></td> <td><u>생년월일</u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신청자	주소				인적사항	성명		<u>생년월일</u>	
신청자	주소																				
인적사항	성명		<u>주민등록번호</u>																		
신청자	주소																				
인적사항	성명		<u>생년월일</u>																	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42조(생업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·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·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## □ 노인복지법

제25조(생업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## 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15조(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## 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16조의2(생업지원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3.28.]

## 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8조의2(생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·사무용품·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,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.

## 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[별표1] 장애인의 장애등급표(제2조 관련)

### 6. 지적장애인

#### 제1급

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

#### 제2급

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,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

#### 제3급

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·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

## 7. 자폐성장애인

### 제1급

ICD-10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, 10th Version)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,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

### 제2급

ICD-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,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

### 제3급

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
## 8. 정신장애인

### 제1급

1. 정신분열병으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,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(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
2. 양극성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·의욕·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(症狀期)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
3.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, 기분·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

4.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

#### 제2급

1. 정신분열병으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,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
2. 양극성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·의욕·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
3.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, 기분·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
4.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

#### 제3급

1. 정신분열병으로 망상, 환청,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,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2. 양극성정동장애(조울병)로 기분·의욕·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,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3.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·의욕·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
4.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